

서울특별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을 위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925
----------	-----

2009년 6월 25일
보건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09년 6월 17일, 최병조의원 외 25명
- 나. 회부일자 : 2009년 6월 19일
- 다. 상정일자 : 제 216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2009년 6월 25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최병조)

-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및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근거하여 서울시 장애인들의 경제적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장애인들의 사회적 지위향상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임.

- 지금까지 서울시의 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은 전국 지자체 평균이하

로 매우 저조한 상황임.

- 서울시의 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을 보면, 전국 시·도 가운데 하위 5위에 해당될 만큼 미흡한 실정이고, 서울시의 법정 의무구매액 구매비율은 2006년 36.9%, 2007년 29.1%, 2008년 상반기 23.7%로 2년 연속 하락하였는데, 이는 전국 지자체 평균 44.5%보다 월등하게 저조한 실정임.
- 한편 경기도와 전라북도에 장애인생산품 구매촉진을 위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으며, 우리 서울시도 본 조례를 제정하여 장애인복지단체 등에서 생산한 제품의 우선구매 대상기관 범위를 규정하고, 우선구매 대상물품을 지정하여 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장애인 생산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가능하게 하여, 장애인 생산품의 판매촉진과 이를 통한 지속적인 장애인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임.

3. 검토보고(수석전문위원 김태호)

□ 총괄

-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및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서 규정한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단체에서 생산한 제품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장애인 생산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가능하게 하고,

장애인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려는 것으로, “우선구매 대상기관”, “우선구매 대상물품”, “우선구매 이행계획의 수립 및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본 조례안은 이를 통해 장애인들의 경제적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장애인들의 사회적 지위 향상 및 삶의 질을 증진시키려는 것으로서, 본 조례제정의 의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세부의견

○ 안 제2조(정의)

- 조례에서 명기한 “장애인생산품” 및 “중증장애인생산품” 개념은 「장애인복지법」 제44조 및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서 각각 규정되어 있어 문제가 없음.

○ 안 제4조(우선구매 대상기관)

- 「장애인복지법」 제44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그 소요물품 중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정한 품목과 물량의 범위 안에서 장애인복지시설과 장애인복지단체에 생산을 의뢰 하여야 하며, 생산하는 물품의 구매를 요청 받으면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장애인복지시설과 장애인복지단체에서 생산한 물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조례가 명기한 대상기관은 합당한 것으로 판단됨.

○ 안 제5조(우선구매 대상물품)

- 시장이 우선 구매해야 할 대상과 물품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별표 3] 및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 제7조에 규정되어 있어 조례로 명기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음.

[별표 3]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물품 및 비율

우선구매품목	우선구매비율
1. 사무용 양식(봉투, 진행문서 화일, 책 표지)	100분의 5 이상
2. 사무용 종이류(복사용지, 신문용지, 증질지, 감열지)	100분의 5 이상
3. 화장용 종이류(화장지, 종이수건, 기저귀)	100분의 10 이상
4. 칫솔	100분의 20 이상
5. 장갑 및 피복 부속물(넥타이, 손수건)	100분의 20 이상
6. 포대(폴리에틸렌 및 폴리프로필렌 포대)	100분의 20 이상
7. 피복류(모자, 작업복, 잠바, 조끼)	100분의 5 이상
8. 가구류	100분의 5 이상
9. 전자·정보 장비(휴대용플래시 메모리저장장치 및 유선전화기)	100분의 5 이상
10. 가정용 설비물(담요, 수건, 이불, 베개, 방석)	100분의 5 이상
11. 사무용 소모품(결재판, 재생토너·카트리지)	100분의 5 이상
12. 서적, 그 밖의 잡종 인쇄물	100분의 5 이상
13. 현수막	100분의 5 이상
14. 종이컵	100분의 5 이상
15. 상자(마분지 및 골판지 상자)	100분의 5 이상
16. 신발류	100분의 5 이상
17. 식료품(빵 및 떡류, 땅콩, 견과류 가공품)	100분의 5 이상
18. 화훼 및 농산물(꽃·야채·버섯 및 각종 유기농 산물)	100분의 5 이상

○ 안 제6조(우선구매 이행계획수립)

- 상위법령에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촉진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동안 시에서는 구체적 실행이 부족한 점이 있어 이에 장애인단체로부터 민원제기가 있었으므로 본 조례안에서 구체적 실천을 위해 시장이 우선구매 이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한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됨.

○ 안 제7조(우선구매의무)

- 우선구매 대상기관은 장애인생산품 및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를 요청받았을 경우, 해당 물품의 가격과 납품기한 등이 적정한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장애인복지법」 제44조 및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7조에서 우선구매 및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문제가 없음.

○ 안 제9조(구매협조요청)

시장은 공공단체 등에 장애인생산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장애인복지법」 제9조 및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3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명기되어 있어 문제가 없음.

- 한편, 관련법인 「장애인복지법」과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 유사법 정비차원에서 통합하는 「장애인복지법」개정안이 현재 입법예고 중에 있으나, 그 내용이 두개의 법을 통합하는 것으로, 본 조례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 내용은 그대로 살아있으며, 관련법령이 통합되면 그때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관련 조항을 정비하면 될 것으로 생각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질의 : 서울특별시의 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이 전국 지자체에서 하위 5위권에 위치해 있는데, 이렇게 부진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 요망.
- 답변 : 장애인생산품의 품질, 단가 등의 이유로 각 기관에서 꺼려하는 것 같은데, 차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음(집행부 답변).
- 질의 : 장애인생산품의 질이 낮은 것은 생산환경이 어렵기 때문으로, 생산여건을 개선시켜 주어야 할 것임. 한편, 네트워크, 홍보 등의 환경조성도 중요하지만 조례를 통해 적극적으로 구매를 촉진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 요망.
- 답변 : 원칙적으로 동의함(집행부 답변).

5. 토론요지 : 없음

6. 소위원회의 심사보고 요지 : 구성하지 않았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출석위원 전원 찬성)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관계법규 :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 기 타

- 입법예고 : 해당사항 없음

-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서울특별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조례안

의안 번호	925
----------	-----

발의연월일 : 2009년 6월 17일

발의자 : 최병조의원 외 25인

1. 제안이유

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에서 규정한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단체에서 생산한 제품 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장애인생산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가능하게 하고 장애인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 하려는 것임.

나. 이를 통해 장애인들의 경제적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장애인들의 사회적 지위 향상 및 삶의 질을 증진 시키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촉진을 위한 지원 및 시책 추진, 우선구매 이행계획 수립 등의 서울시장 책무를 규정(안 제3조 및 제6조).

나. 장애인생산품을 우선구매해야 하는 대상기관의 범위를 규정(안 제4조).

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별표3에 해당하는 품목

과 물량을 기준으로 우선구매 대상물품을 지정 (안 제5조)

라. 우선구매 대상기관에게 우선구매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기관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구매실적을 공표하도록 함(안 제7조).

마. 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에 기능보강사업비, 기술지도, 홍보, 마케팅, 수출 등의 지원(안 제8조).

바. 장애인 생산품의 생산 및 판매에 기여한 기관 및 개인에 대한 포상(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장애인복지법」 제44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나. 기 타

(1) 입법예고 :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44조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서울특별시의 장애인생산품 및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생산품”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에서 규정한 요건을 갖춘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단체가 생산한 제품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에서 생산된 제품 및 동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서울특별시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생산품과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우선구매 대상기관) 「장애인복지법」 제44조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생산품과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구매 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특별시(이하 “시”라고 한다)와 그 소속 사업소 및 직속기관
2. 시 산하 출연·투자·출자기관

제5조(우선구매 대상물품) ① 시장은 시 지역에서 생산한 장애인 생산품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별표3에 해당하는 품목과 물량을 기준으로 우선구매 대상물품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4조의 우선구매 대상기관은 「장애인복지법」 제44조제2항과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우선구매 대상물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

제6조(우선구매 이행계획의 수립) ① 「장애인복지법」 제44조제1항 및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제4조의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장은 그 소요물품 중 그 품목과 물량을 정하여 매년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이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이행계획에는 우선구매 물품 및 구매목표를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중증장애인 생산물품에 대하여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7조(우선구매 의무) ① 제4조의 우선구매 대상기관은 제2조에서 정의한 장애인생산품 및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를 요청받았을 경우 해당 물품의 가격과 납품기한 등이 적정한 경우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4조의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구매 실적을 파악하여 제6조제1항의 우선구매 이행계획에 미달할 경우 해당 기관의 장애에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을 서울시보 및 서울시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제8조(생산·유통 및 판매지원) ① 시장은 관내의 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에 대하여 제품개발, 산·학 협력 및 기술지원 등을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장애인 생산시설에서 생산한 생산품의 유통·판매 및 수출을 위한 홍보·마케팅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각종 행사를 개최할 경우 장애인 생산품을 판매·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구매 협조요청) ① 시장은 장애인 생산품의 판매 촉진을 위하여 시에 소재한 학교, 공공단체, 체육시설 등(이하 “학교 등”이라 한다)에 장애인 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학교 등과 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간의 자매결연을 알선하여 장애인생산품의 판매 촉진과 이를 통한 지속적인 장애인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포상) 시장은 장애인생산품의 생산 및 구매촉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기관 및 개인 등을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